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3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종전의 제2항부터 제15항을 제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한다.

②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이외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·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설명을 들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화된 전자적 정보처리장치(이하 “전자적 상품설명장치”라 한다)를 활용할 수 있다.

1.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
2. 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경우,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
3.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
4.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것

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-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중 “2022년”을 “2027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-36조(통신판매시 준수사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-36조(통신판매시 준수사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이외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·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설명을 들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화된 전자적 정보처리장치(이하 “전자적 상품설명장치”라 한다)를 활용할 수 있다.

1.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

2. 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경우,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

3.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

4.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

② ~ ⑮ (생략)

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-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제4-9조제4항의 개정규정, 별표 7-2 제2호가목 단서의 규정은 2022년 3월 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에 따른 경과 조치)

① ~ ③ (생략)

④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법률 제10522호 「농업협동조합법」 부칙 제1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별표 7-2 제7호,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영 별표5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2022년 3월 2일부터 별표 7-2 제7호,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.

⑤ 법률 제10522호 「농업협동조

안내할 것

④ ~ ⑰ (현행과 같음)

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-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-----

----- 2027년 3월 1일 -----
-----.

제3조(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에 따른 경과 조치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2027년 3월 2일 -----
-----.

⑤ -----

합법」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
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
은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
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
보험계약 유지, 관리 및 보험
계약 대출관련 업무를 영 제4
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
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⑥ ~ ⑨ (생 략)

-- 2027년 3월 1일-----

-----.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